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03”을 “202”로 하고, 일반직 계 “198”을 “1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1”을 “190”으로 한다.

별표 5 2)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3</u>	<u>202</u>	-1
•	•	•	
•	•	•	
일반직 계	<u>198</u>	<u>19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1</u>	<u>190</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28